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82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종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9.
3. 회부연월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부가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①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수소전문기업의 범위 및 지원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소전문기업¹⁾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비중 또는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기준²⁾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함.

현행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게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수소사업의 안전성 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외국과의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 기회 제공
5. 그 밖에 수소전문기업의 지원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비와 기술개발 부담이 크고 상용화되기 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나 연구 개발 투자실적을 갖춘 수소전문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⁴⁾

이에 정부는 보조사업을 통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7개의 예비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75억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을 받은 86개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중 12개사(14%)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안정적·지속적인 지원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음.

제10조(보조·용자) ①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1. 수소사업의 안전성·경제성·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용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20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상임위) 및 2025년 예산안 심사(예결위) 과정에서 예비수소전문기업의 수소전문기업으로 전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2022~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현황]

(단위: 건수,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계
지원건수	34	31	48	74	187
지원예산	1,500	1,500	1,800	2,700	7,500
대상 지방자치단체	경남, 충남, 충북	경남,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전북, 충북	경남, 전남, 부산, 울산, 전북, 충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개정안은 수소산업 관련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 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수소전문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이라도 수소산업 관련 기술 또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성장초기 단계부터 지원하여 수소전문기업으로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 투자비와 기술개발 부담이 큰 수소산업 분야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업법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⁵⁾은 국내 창업기업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사업화 지원, 국제교류 촉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수소전문기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연구개발 투자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제2조에 정의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는 반면,⁶⁾

개정안의 “예비수소전문기업”의 경우 별도의 정의 규정 없이 “수소 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1조(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국내 창업기업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5.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 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운영
7. 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소전문기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이나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기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 등이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지원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인정요건이나 객관적인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법 체계적으로 개정안은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예비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체계적으로 현행법 제9조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제10조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을 규정하는 개정안은 그 성격상 현행법 제9조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9조의2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기단계수소기업의 발굴·육성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⁷⁾

문 의 처
02)6788-5533

7)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비수소전문기업 사업지원체계 및 관리기준 마련을 위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26.하반기)으로 9월 중 계약 예정임.

참고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예비 수소전문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지원규모)** 2,700백만원('25년, 민간경상보조)
* 각 4.5억, 6개 지자체(기관)
- **(지원내용)** '24년 선정 지자체(기관) 연차평가를 통해 '25년 지원 여부 결정, 공고를 통해 신규 지자체(기관) 추가 선정('25년 총 6개소 지원)

구분		세부 내용
수행기관 선정	선정대상	· 광역시·도 기업지원기관
	지원규모	· 지자체별 750백만원 이상(국비 450백만원, 국비:지방비 = 6:4 매칭)
	지원절차	· 사업 공모 → 지방자치단체(기업지원 수행기관) 지원 · 수행기관 선정(한국수소연합)
수행기관 진행	선정대상	·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45백만원 국비 지원 (기업지원금 중 지방비 지원 비율 및 금액 제한 없음)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 기준 기업부담금 20%(현금) 이상 ※ (예시) 총사업비 1억원 = 정부 4.5천만원 + 지자체 3천만원 + 기업 2.5천만원
	지원기한	· 단년도 지원(1+1년) ※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필요시 추가 공고)

○ (사업추진체계)

-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지원기관이 자율적으로 관할 지역의 예비수소전문기업 선정 및 육성 지원

